

의안번호	2203235
의 퇴 인	황희 의원
회 답 일	2024. 10. 16.
추 계 번호	24B2955

인공지능책임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분쟁 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운영 등을 수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7억 4,500만원(연평균 1억 4,9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안 제18조)	300	—	—	300	—	600	120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운영 (안 제23조)	29	29	29	29	29	145	29
계	329	29	29	329	29	745	149

주: 1. 실제 연구용역 단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이 안전하게 개발 및 이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국가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국가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대국민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5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등)	사업 분야, 매출액 및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이하 “사업자책임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자책임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3	안 제7조(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이하 “기술개발”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음(제2항)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7. 인공지능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인공지능사업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재량규정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함(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8조(기술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안정성·신뢰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9조(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보급 2.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내의 표준의 조사 연구·개발 3.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국제 표준화 사업 4. 그 밖에 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 부문에서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표준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6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제1항)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설립 또는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공지능 기술 관련 교육의 지원 5. 인공지능 기술 관련 자격 제도의 정착 및 전문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7	안 제11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하여 선도적으로 시범 적용하는 선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도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12조(인공지능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정부는 인공지능기술의 개발성과를 실용화(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함. 이하 같음) 하려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술개발로 생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그 밖에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또는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9	안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5조(국제협력)	정부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장려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16조(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실시)	정부는 건전한 인공지능 분야 발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분야 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2	안 제18조(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과 그 알고리즘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3년마다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13	안 제20조(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무)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고위험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14	안 제22조(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 책임의 일반원칙)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는 보험 가입을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정부는 고위험인공지능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활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또는 보험상품 개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5	안 제23조(인공지능 분쟁조정위원회)	인공지능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항)	의무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음.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봄(제6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7조(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9조(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	—	
3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4	안 제12조(인공지능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	
5	안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6	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인공지능의 안전한 개발 및 이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7	안 제5조(인공지능사업자의 의무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업자책임위원회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 수 없음
8	안 제8조(기술기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기술의 안정성·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의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술기준 고시 분야, 대상 범위 등을 알 수 없음
9	안 제11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사회 각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의 이용을 활성화하거나 인공지능 기술과 다른 기술을 접목하기 위한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해당 선도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선도사업의 분야, 내용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10	안 제15조(국제협력)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인공지능의 활용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력을 장려하는 사업을 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없어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1	안 제16조(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실시)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정부가 인공지능사업자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분야 윤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의 주기,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함
12	안 제20조(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위험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 모니터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 수 없음
13	안 제22조(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 책임의 일반원칙)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정부가 고위험인공지능사업자의 손해 담보 보험 가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음
14	안 제18조(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5	안 제23조(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7조(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사업	개요	'24예산
	인공지능산업 융합기술개발(R&D)	다양한 분야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AI+X R&D 활성화 및 초기시장 창출	1,180
	인공지능첨단 원천유망기술 개발(R&D)	AI 기반의 공공·산업 등의 난제 해결을 위해 도메인 전문가와 AI 연구자의 협업 기반 AI 원천기술 확보 R&D	7,000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 기술 개발(R&D)	AI 기술 한계 극복 및 인간이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구현으로 차세대 AI 핵심원천 기술 확보	45,075
	인공지능챗봇 지선도기술개발(R&D)	AI 분야 공개 경진대회 기반의 경쟁형 R&D 추진 및 우수팀의 후속 연구 지원을 통한 AI 기반 확산	1,400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술개발(R&D)	한국어 기반 사전학습을 통한 한국어 언어모델 구축 및 텍스트·이미지·비디오 생성·변환 등 멀티모달 기술개발	480
	AI정밀의료솔루션(닥터앤서 2.0) 개발(R&D)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AI 의료 SW 개발	7,937
	차세대생성AI 기술 개발(R&D)	생성AI가 갖는 편향성·환각현상 등 한계극복을 위한 차세대 생성 AI기술 개발	4,000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단지조성(R&D)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R&D를 통한 산업 생산성 혁신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新제품·서비스 창출	2,070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9조(인공지능 기술의 표준화)	사업	개요	'24예산
	지능 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신뢰성기반조성) 內 AI 표준화 과제	-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우려(차별·편향 심화, 사생활 침해 등) 해소를 위해 AI 신뢰성 검증, AI 영향평가 등 AI 윤리의 사회적 정착 지원 및 관련 법제 정비 추진(인공지능기술 표준화 과제)	200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사업	개요	'24예산
	정보통신방송 혁신인재양성(교육훈련-인공지능 핵심인재양성)	AI·AI반도체·융합보안 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산·학 공동 연구 교육 및 글로벌 협력 교육과정 개발 등을 통한 석·박사 인재양성	20,000
	인공지능융합 혁신인재양성	산·학 공동 AI융합프로젝트를 통해 산업계 현안 해결 지원 및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실전형 고급 인재양성	10,500
	생성AI선도인재양성	국내 대학과 국내·외 생성AI 선도 기술 보유기관의 공동연구 및 우수 연구자 파견 심층연구 지원을 통해 생성AI 기반 新서비스 모델 발굴, 생성AI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세계 최고 수준의 생성AI 전문 인재 양성	3,500
안 제12조(인공지능의 실용화·사업화 지원)	사업	개요	'24예산
	지능 정보산업 인프라조성(AI 바우처 지원)	기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	42,500
	DB 산업 육성(정보화)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및 데이터 기업 역량 강화	2,621
	데이터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개발·실증 및 사업화 등을 지원	6,000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13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	개요	'24예산
	지능 정보산업 인프라조성 (AI 바우처 지원)	기업 현장의 문제점 해결 및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을 지원하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	42,500
	지능 정보산업 인프라조성 (고성능 컴퓨팅 지원)	인공지능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의 학습용 및 추론용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임차하여 중소·벤처기업 등에 제공	13,2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본 추계에서는 현행법에 따라 시행 중인 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8조의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안 제23조의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2026년 및 2029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운영) 제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 정부위원회의 최근 1년 회의 실적을 참고하여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민간위원 15명)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3개 분야의 조정부(민간위원 3명)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¹⁾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 정부위원회의 최근 1년 회의 실적('22.7.~'23.6.)²⁾

1)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 총 20명, 본회의 4회, 조정부 회의 12회)
-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 총 11명, 본회의 6회, 조정부 회의 미개최)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6억원(연평균 1억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계획 등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참조
 - 연구용역은 2026년과 2029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기본계획명	실시년도	예산
제3차(2022~2026)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21	200
임무지향적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 수립 연구	2022	300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22	400
평 균		300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 및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내용 참조

2) 2023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행정안전부 발간) 참고

[표 4]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고위험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300	-	-	300	-	600	120

주: 실제 연구용역 단가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3조)

- 제정안에 따라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를 구성·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1억 4,500만원(연평균 2,900만원)으로 추계
 -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민간 위원은 15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15명 \times 30만원 \times 4회 = 1,800만원$)
 -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 3개 분야 조정부에 민간 위원은 3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3개분야 \times 3명 \times 30만원 \times 4회 = 1,080만원$)

[표 5]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운영	29	29	29	29	29	145	29

주: 실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상황의 변동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 중 현재 수행 중인 재정사업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현행 AI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사업개요
AI정밀의료SW선도기 반조성	19,838	· 의료분야 인공지능 활용 확산 지원 및 정밀의료 SW 산업 육성지원
DB산업육성(정보화)	2,621	·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및 데이터 기업 역량 강화
AI 미디어·문화 향유 확산	9,000	· 영상, 이미지, 음원 생성 및 분석 등 미디어·문화 분야에 초거대 AI 를 활용한 전문가 보조 서비스 개발
AI 법률보조 서비스 확산	7,500	· 초거대 AI 기반 법률서비스 개발을 통해 법률 전문가 업무 효율성 을 제고하고 법률 분야 AI 일상화 촉진
AI 학술 및 개발역량 강화 지원	7,800	· 연구자의 학술활동(논문 작성 등) 등을 보조하는 초거대 AI 기반 학술활동 지원 서비스 개발
AI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선도	8,000	· 건강상담, 질병발병 가능성 예측 등 선제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으로 국민 건강수명 향상 지원
AI 심리케어·돌봄지원	6,000	· 일상생활 속 부담 없는 정서장애 케어 지원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지원	4,000	·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및 생활 밀착형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확산 지원
초거대 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확산 환경 조성	4,000	· 초거대 AI 인프라 구성하여 융합플랫폼 실증 및 산학연 협력 생태 계 조성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9,350	· AI기반 농기계 자율작업 및 정밀농업 기술 개발·실증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10,000	· 제조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AI 융합 솔루션 개발·실증을 지 원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의료기기 실증지원	5,000	· 지역 의료기기 제조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생태계 저변확대 및 활성화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	40,700	· 광주 AI집적단지 조성, AI인력양성(AI융합대학, 고급인재), 창업 지원 등
K-Health국민의료AI 서비스 및 산업생태계 구축	11,000	· 헬스케어 데이터 활용 지원)을 통한 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으로 데이터·AI융합 헬스케어 산업 육성
데이터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6,000	· 의료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서비스 개 발·실증 및 사업화 등을 지원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사업개요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 강화	61,390	· 데이터 바우처, 데이터 안심구역 운영,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데이터경제 가속화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 성	86,801	· 클라우드 이용확산 및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산업 육성 추진
데이터활용확산 정책지원	3,639	·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운영, 데이터 품질 인증·가치평가·분쟁조정·표준계약서 등 제도 시행
빅데이터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25,222	· 빅데이터 센터 육성 및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데이터 생산·수집·활용 활성화
부처협업 기반 AI확산	24,000	·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부문 AI융합 지원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 성	119,623	· AI바우처,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지원 및 AI 신뢰성 검증체계 마련
SaaS혁신펀드	20,000	· 혁신적인 SaaS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추진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조성	2,804	·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곳에서 검색·활용하고 데이터 산업법 등 관련 제도 운영을 지원
인공지능산업융합기술 개발(R&D)	1,180	· 다양한 분야 인공지능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AI+X R&D 활성화 및 초기시장 창출
인공지능첨단원천유망 기술개발(R&D)	7,000	· AI 기반의 공공·산업 등의 난제 해결을 위해 도메인 전문가와 AI 연구자의 협업 기반 AI 원천기술 확보 R&D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 원천기술개발(R&D)	45,075	· AI 기술 한계 극복 및 인간이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한 AI 구현으로 차세대 AI 핵심원천 기술 확보
인공지능챌린지선도기 술개발(R&D)	1,400	· AI 분야 공개 경진대회 기반의 경쟁형 R&D 추진 및 우수팀의 후속연구 지원을 통한 AI 기반 확산
한국어대형언어모델기 술개발(R&D)	480	· 한국어 기반 사전학습을 통한 한국어 언어모델 구축 및 텍스트·이미지·비디오 생성·변환 등 멀티모달 기술개발
AI정밀의료솔루션(닥 터앤서2.0)개발(R&D)	7,937	· 폐암, 간질환 등 12개 질환의 진단 보조를 지원하는 AI 의료 SW 개발
차세대생성AI기술개발 (R&D)	4,000	· 생성AI가 갖는 편향성·환각현상 등 한계극복을 위한 차세대 생성 AI기술 개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 집적단지조성(R&D)	2,070	· 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R&D를 통한 산업 생산성 혁신 기술 확보 및 인공지능 기반 新제품·서비스 창출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